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정책 추진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 시책 추진 시 의견청취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구체화(안 제6조)
- 센터 운영규정 공개 의무화(안 제7조제3항)
-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의견청취 의무 신설(안 제8조제3항)

3. 입법예고기간: 2026. 6. 1. ~ 2026. 6. 8. (8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